

이 보도자료는 2019. 6. 23.(일) 09:00[6. 24.(월)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19. 6. 23. (일)

자료문의 : 공판송무부
전화번호 : 02-3480-2356
주책임자 : 양형정책관 김찬중

제 목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 정립·시행

- ▶ 대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2019. 6. 25.부터 전국 실시 예정임
- ▶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 ②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기준 대폭 상향
 - ③ 0.08%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④ 어린이차량 운전자,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는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 및 도로상의 안전 담보
 - ⑤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여 균형있는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1 사건처리기준 제정

- 국회는 故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법률을 개정

	기존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개정 (위험운전치사상)	○ 상해 : 10년 이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사망 : 1년 이상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 단속기준 : 0.05% ○ 음주전력 3회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단속기준 : 0.03% ○ 음주전력 2회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기타 음주수치별 형량 상향

※ (현행법) 1회의 음주전력자가 재차 0.05%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정형이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 (개정법) 같은 사례의 경우 2년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검찰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 및 결정문 분석작업,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되었음

2 검찰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에 대한 기준 마련

- 검찰은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하여 기준 정립
 - 교통사고 치사상, 도주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사례 등 수천 건에 이르는 자료의 분석, 기존의 사건처리기준, 법원 양형기준, 해외의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교통범죄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 마련
- 신규 사건처리기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재범 이상 상습범에 대하여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

나. 검찰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음주 교통사고 엄정 대응

-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 별도로 설정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
 -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 구성
 -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적용 예시-음주 교통사고(故윤창호씨 사건 등)]

0.181% 음주 상태 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피해자 1명 사망, 1명 중상 등)

- (기존 실무례) 통상 4년6월 내외의 형량 분포
- (신규 검찰기준) 7년이상, 최고 무기징역(법정최고형)까지 구형 가능

재범 이상 전력자 등 엄벌

-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하여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
 -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 구형을 강화
 - 동종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

[적용 예시-상습범]

10년 내 교통관련 전과가 7회(음주전력 3회 포함) 있는 피의자가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의 만취상태로 치상사고(전치3주)

- (기존 실무례) 통상 8월 내지 2년 사이의 형량 분포
- (신규 검찰기준) 3년 이상, 최고 15년까지 구형 가능

음주 도주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

-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인해, 높아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의 증가 가능성이 있음**
 - ※ 일본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2001년 도입하여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후, 차라리 도주를 하고 술이 깬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는게 낫다는 이른바 '도주의 이득' 문제가 지적되어 일반 교통사고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기도 하였음
- 위와 같은 '**도주의 이득**'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

-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

[적용 예시 - 뺑소니 사망사고]

0.2%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다음 도주한 경우

- (기존 실무례) 통상 4년 내지 6년 사이의 형량 분포
- (신규 검찰기준) 9년 이상, 최고 무기까지 구형

기타 주요내용

- **(구속기준 강화)** 0.08%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또는 도주 사고를 낸 경우, 음주 등 교통전력이 수회 있는 경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
- **(어린이 보호 등)**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인자로 반영
- **(구형의 균형 담보)** 음주사고 등에 대하여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요소로 반영하여 균형 있는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3

향후계획

- **2019. 6. 25.(화)부터 교통범죄군 사건처리기준 전국 시행**
-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임. ▣